

KERI Brief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wl@keri.org)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명목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로 사실상 1위이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 매우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현행 상속세제 유산세 방식은 실제 상속분이 많은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 세 번째,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으나, 적용대상 제한(매출액 5,000억원 이하), 피상속인 요건(10년 이상 기업경영 등) 외에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으로 그 적용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의 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

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강화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업은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현행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영권 승계 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기업가의 경영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고용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 시 세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하고,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 후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

○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명목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로 사실상 1위임

- 이는 기업의 상속이 어려워져 지속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됨

○ 상속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2021년 기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강화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 경우 기업은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채투자보다는 기업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한편, 중소·중견기업에는 '기업상속공제제도'가 있으나, 적용대상 제한(매출액 5,000억원 이하), 피상속인 요건(10년 이상 기업경영 등) 외에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으로 그 적용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함

- 우리 경제의 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기업상속공제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임

□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과방식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어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음

○ 현행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데, 실제 상속분이 많은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 이에 반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형태를 택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상속·증여세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준비하고 있음

□ 지금의 경제위기급 상황을 해결하고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려면, 상속세제의 개편이 필요함

○ 특히,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절실함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의 전반적인 모습과 국내외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조세행평을 실현하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II. 상속세제 현황

▣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5단계 초과누진세제(10%~50%)로 과세하고 있음¹⁾**

○ 우리나라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약 25%)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종합소득세는 8단계 초과누진세제(6~45%)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5%p 높은 상황

○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인데, 이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는 국가는 14개국, 그중 4개국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음²⁾

▣ **과도한 상속세율에 더하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함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음**

○ 2019년 말 개정 전에는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10~30%까지 할증률을 차등적용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용만 이루어짐으로써 일반기업은 20% 할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할증하고 있지 않음³⁾

○ 최대주주할증평가로 우리 기업이 적용받는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과중한 것이며, 그 결과 2021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7%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첫번째로 높인데, 벨기에, 프랑스와 공동 1위이고 매우 과중한 수치임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정부는 1997년 기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음**

○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⁴⁾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상황

1) 상속세율(5단계 초과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음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

2) 프랑스, 벨기에, 독일, 칠레,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이 중 스위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음

3)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률

최대주주 등 지분율	2019년 개정 전		2020년~		2023년~	
	일반 기업	중소 기업*	일반 기업	중소 기업	일반 기업	중소·중견 기업
50% 이하	20%	10%	20%	0%	20%	0%
50% 초과	30%	15%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4)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표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건	기준	상세 내용
가업	계속경영기업	•10년 이상 계속·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모두 충족)	-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모두 충족)	-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독립성 기준을 충족 - 매출액의 평균금액(3개 연도) 5천억원 미만 -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심사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나 이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배우자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간주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정리

○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① 해당 가업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②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대분류내 변경허용) 등 위반, ③상속인의 지분 감소, ④상속 개시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위반하게 되면 기간별 추정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 적용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 가업·고용 유지 등 사후요건까지 충족케 함에 따라, 그 결과 2016~2021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연평균 이용건수는 95.7건, 공제금액은 2,967억원에 불과했음

○ 같은 시기 독일은 연평균 이용건수가 10,308건으로, 공제금액만 무려 163억유로(한화 약 23.8조원)에 달해, 우리나라와 독일과 비교할 때 100배 이상 적은 수치임

〈표 2〉 한국과 독일의 기업상속공제 결정 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독 일	
	건 수	공제금액 (백만원)	건 수	공제금액 (1,000유로)
2016년	76	318,378	10,636	21,424,522
2017년	91	222,598	9,260	20,387,105
2018년	103	234,421	8,773	11,634,555
2019년	88	236,343	9,263	12,022,511
2020년	106	421,049	12,043	7,688,724
2021년	110	347,505	11,874	24,759,638
평 균	95.7	296,716	10,308	16,319,509

자료: 국세통계연보, Finanzen und Steuern(Erbchaft- und Schenkungsteuer)

〈표 3〉 2022년 세법개정 중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구 분	현행	2022년 세법개정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피상속인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40%(상장법인 20%) 이상	
공제한도	200억원(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500억원(30년 이상)	300억원(10년 이상), 400억원(20년 이상), 600억원(30년 이상)	
사후 관리 요건	기간	7년	5년
	업종유지	중분류 내	대분류 내
	고용유지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 7년 평균 100%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5년 평균 90%
	자산처분 금지	20%(5년 이내 1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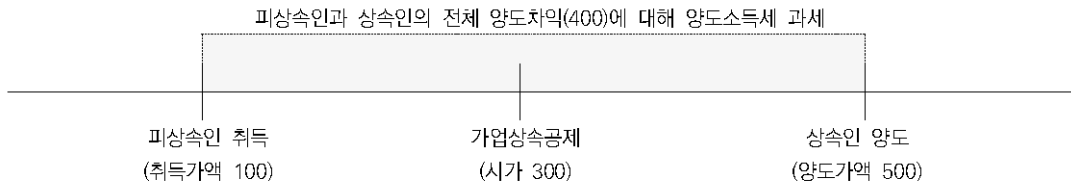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정리

- 기업상속공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 시 다음과 같이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했지만,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일부까지만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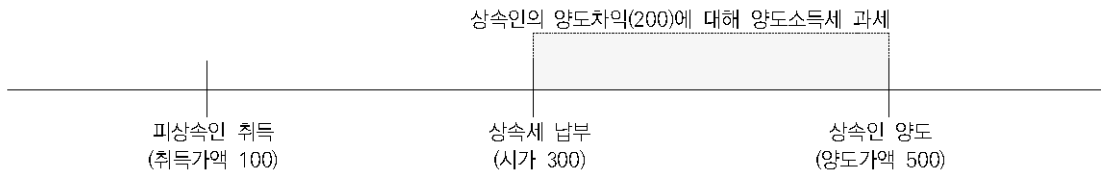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과세되는 '과세이연'되는 것이며, 상속세를 상속 당시에 내지 않고 그 자산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므로 세금의 빈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됨

㉑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㉒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 상속의 경우



III. 국제적 동향

□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에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

- 상속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⁵⁾를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5개국은 이를 폐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았음
-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주로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이연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9개국), 세율인하 또는 공제혜택(10개국)을 적용하는 등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음
 - 영국 등 9개 국가⁶⁾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고,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속세율이 낮아지도록 상속세제를 설계하고 있음

□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모든 기업⁷⁾이 그 대상이며, 적용요건 또한 우리나라보다 완화되어 있음

- 피상속인 관련 요건이 있는 국가는 영국과 일본 2개국인데, 영국은 피상속인이 2년간 보유만 하면 되고, 일본은 기간 제한 없이 50%의 주식만 보유하면 됨

- 상속인 요건도 일본만 적용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대부분 길지 않아 상속 후 기업경영 기간은 프랑스가 3년, 독일은 5년임
- 지분보유 의무기간도 프랑스가 4년, 독일·일본이 5년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짧거나 같음
- 영국은 특별히 사후관리 요건이 아예 없는 상황임

- 독일의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기업영위나 상속인의 기업종사·대표자 취임 등은 제도상 요건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지분율도 25%로, 우리나라(40%, 상장기업은 20%)보다 낮음
- 일본 또한 2019년 4월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시행, 납세유예 대상 주식 수의 상한을 없애고, 승계 후 5년간 80%라는 고용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 유예되도록 할만큼 기업승계를 장려하고 있음

5) 상속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은 세수입을 얻기 위해 국부유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음(William W. Beach, 2001. "Time to Repeal Federal Death Tax: the Nightmare of the American Dream", Backgrounder,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4)

6) 영국,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 9개국임

7) 일본은 비상장중소기업에 한정함

〈표 4〉 주요국의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비교

구 분	한국	독일	일본	영국	
사 전 요 건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세납부능력요건 심사 •자산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규모 제한 X〉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장 중소기업 	X
	피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명위기간 10년 이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총사 •특수관계인 포함 40%(상장 2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 및 조합원 합산 2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의결권 50% 초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내 가업중사 및 대표자 취임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내 대표취임 •최대주주, 의결권주식의 50% 초과 보유 	X
가업상속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사업자산 등 가액 100% •한도:300억원(10년 이상), 400억원(20년 이상), 600억원(3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공제) 비상업용자산 50% 이하, (100%공제) 비상업용자산 10% 이하 •자산 2,600만유로 초과시 75만유로당 1%p씩 공제를 감소, 최대공제가능 자산 9천만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 2/3 한도(특별조치: 공제상한 없음) •비상장주식의 80% 상속세 유예(특별조치: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비상장주식, 사업관련지분 •50%: 상장주식, 토지, 건물, 설비 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기간: 5년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대분류내 변경은 허용) •가업자산 40% 이상 처분금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5년 평균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85% 공제요건 - 5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5년간 400% 이상) •② 100% 공제요건-7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7년간 7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 후 5개월내 대표이사 취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속지분 유지 •근로자 수 80% 이상 5년간 유지(예외 및 탄력 적용가능) 	X	

자료: 저자 정리

□ 최대주주할증평가와 관련해서도,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지배지분의 할증과 관련하여 정형화된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고, 지배지분의 할증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실재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황에 적합한 평가모형과 평가방법을 찾고, 평가 자체가 대주주 지분을 전제로 이루어지거나, 평가에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지분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임
- 미국은 한 사건의 판례가 다른 사건에 바로 적용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지배지분 할증의 할증률은 법인의 지배 형태, 회사의 규모, 회사의 업종, 지배주식의 영향력 크기, 주식 가치 증가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소수지분의 할인과 관련하여 할인의 정도도 법원에 의해 개별 사건마다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되고 있음
- 일본은 회사의 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주식의 평가 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 지배주주 주식은 순자산가액, 유사상장회사 주가 등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액주주 주식은 배당금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임
 - 배당금으로 평가한 소액주주 주식 평가액이 지배주주 평가액보다 클 경우 지배주주 평가액을 한도로 하는데, 소액주주 주식 평가액은 지배주주 주식보다 낮게 평가되도록 하여 소액주주 주식은 할인평가함
- 영국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주주 지분을 전제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주식의 보유로 이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주식의 보유로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게 된 경우, 주식의 보유로 주식의 시장성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 주식의 보유로 소액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이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가능함
 - 소액주주의 지분의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하나 그 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독일도 낮은 수익률이나 지속적인 기업활동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할인평가를 하는데, 특히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액주주 지분에는 10% 할인평가를 하고 있음

〈표 5〉 주요국의 주식평가제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상	최대주주 (상장·비상장)	개별주주	소액주주	개별주주	소액주주
할증율	- 일반기업: 20% - 중소기업: 0%	사안별 할증, 할인	사안별 할인	사안별 할증, 할인	10% 할인평가

자료: 김용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9, 수정

IV.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은 한국M&A거래소(KMX)나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음⁹⁾

1. 문제점

□[OECD 2위의 높은 상속세율, 1위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고, 2020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도 OECD 공동 1위임
- 기업승계 시 상속재산은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매각, 물납⁸⁾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기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세이며, 기업승계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8)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주식의 가액이 50% 이상이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물납이 가능함. 그러나 상장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고, 물납한 경우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것임
- 9) 최근 가구 1위업체인 한샘도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음. 2019년 KMX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730개) 중 상속하지 않고 매각하여 현금으로 물려준다는 기업이 118개(16.2%)임

〈표 6〉 상속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상속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2021년 기준)
	직계비속	제3자(일반)	
벨기에	30	80	0.7
프랑스	45	60	0.7
일본	55	55	0.5
한국	50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 시 '60%'에 달함	50	0.7
독일	30	50	0.3
영국	40	40	0.3
미국	40	40	0.1

자료: OECD Statistics

-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100%)에 이어 2위(95%)지만,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중과세 측면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2위, 소득세는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임
 -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국가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 중 15개국¹⁰⁾에 달해 우리나라와 비교됨

㉑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만드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만드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더 큰 조세장벽으로 작용되며,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큼

- 유가증권(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반영률이 부동산 등 기타자산에 비해 높고 최대주주할증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클 경우 실효세율은 60%에 근접하게 됨
 - 국제통계연보상 2021년 기준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유가증권이 가장 큰 비중(47.4%)을 차지하고 있음
-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식 할증평가는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할증률의 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획일적인 현행 할증과세 방식은 그 과세근거가 취약함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소액주주에게는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음

10) 그리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

〈표 7〉 상속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구분	최고세율		
	상속세(직계비속)	소득세	상속세+소득세
벨기에	30	50	80
프랑스	45	45	90
일본	55	45	100
한국	50 *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 시 60%	45	95 (105)
독일	30	45	75
영국	40	45	85
미국	40	37	77
네덜란드	20	52	72

자료: OECD Statistics, 저자 정리

-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셈인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한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58%를 넘어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캐나다(16.5%) 순으로 나타나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음

- 자본이득세 과세국가 중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사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지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 시 과세되지 않음

〈표 8〉 주요국의 기업승계 시 실제 상속세 부담액 비교

구분	상속세 과세					자본이득세 과세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과세대상	18.2조원 × 1.2 (최대주주할증평가 20%)	18.2조원	18.2조원	18.2조원	18.2조원	18.2조원	18.2조원
공제	30억원 (인적공제 최대액)	158억원 (통합공제, 1,206만달러)	5억 4천만원 (기초공제, 5,400만엔)	22.9억원 (인적공제 4인, 170만유로), 3억8천만원 (특별생계공제, 286,900유로)	5억 2천만원 (비과세부분, 32만 5천파운드), 사업자산공제 50%	포함률 50%	-
세율 적용	50%	40%	55%	30%	40%	33%	-
총 세액	10조 9,180억원 - 3,275억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10조 5,905억원	7조 2,745억원	10조 96억원	5조 4,592억원	3조 6,399억원	3조 30억원	- (추후 상속인이 처분시 과세)
실효세율	58.2%	39.9%	55.0%	30.0%	20.0%	16.5%	-

- 주: 1) 18조 2천억원의 주식(상장)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국제만 계산
 2) 우리나라는 30억원 초과시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자산에 대해 20% 할증평가됨. 인적공제는 최대 30억원, 신고세액공제는 3% 적용됨
 3) 미국의 상속세는 백만달러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통합공제액은 1,206만달러까지 공제됨
 4) 일본의 상속세는 6억엔 초과시 55%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초공제액 3천만엔에 상속인 수당 6백만엔을 합한 금액을 공제함. 법인용 기업승계세제는 비상장기업에만 적용됨
 5) 독일의 상속세는 친인척 수준에 따라 법정세율이 달라지는데, 1그룹(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에 대해 2,600만유로 초과시 최대 30%까지 과세되고, 인적공제와 특별생계비공제가 적용됨. 기업상속공제는 9천만유로 이상 사업관련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6) 영국의 상속세는 32만 5천파운드까지 비과세되며 초과금액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산공제는 상장주식의 50%까지 적용됨. 비상장 주식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7)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포함률 50%를 적용하고 214,369캐나다달러 초과시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자료: 임동원,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0.11. 수정 및 보완

ㄹ **현행 상속세제 유산세 방식의 응능부담원칙 위배**

-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과 유산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과세방식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속세(유산세형)와 증여세(유산취득세)가 다른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OECD 회원국들(19개국)이 상속세에 대해 유산취득세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세형 제도를 운영 중임
- 유산세형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유산세형은 회피조세정산론에 근거를 두고, 미실현이익을 포함하여 생전에 피상속인이 회피했던 소득세 부담을 사망 후 정산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 과세행정상 소득세를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응능부담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유산세형은 실제 상속분이 많은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됨
- 반면, 유산취득세형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함

ㄹ **엄격한 사전, 사후 요건으로 인한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유명무실화**

-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현행 기업상속공제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임

- 기업상속공제의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적기 때문에, 2016~2021년 기업상속공제의 연평균 이용건수는 95.7건, 건당 평균 공제금액은 약 31억원에 그쳤음
- 최근 세법개정에서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유지의무가 완화됐지만, 제도의 활용을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요건에 대한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음
 - 2022년 세법개정에서도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만 확대했고, 사전요건은 지분율만 완화했을 뿐이며, 물론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자산유지, 고용유지 등의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한 점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ㄹ **현행 제도 하에서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은 추후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되는 만큼, 기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자산의 양도 시 한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2. 개선방향

-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한 현재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상속세 장벽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강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승계(상속)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영권 승계 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기업가의 경영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고용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
- 우선,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 시 세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하고, 유산 취득세 체제로의 전환 후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함

(1) 상속세율 인하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것이라는 인식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념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음

- 그 결과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GDP 대비 상속세 부담도 OECD 회원국 중 첫번째로 높은 상황임
- 현행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게 OECD 평균(약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완화해야 함
 -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의 재원 그 자체이거나 그것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에 맞으며 최고세율의 수준은 30% 정도가 적당함
 - 상속세 부과 국가 23개 국가 중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임

〈표 9〉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현행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0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30%
30억원 초과	50%		

(2)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할증평가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고, 결국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음

- 현행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액을 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최대주주할증평가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일반기업의 할증과세율을 2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만 실질적인 완화효과가 나타날 것임
-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힌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됨

(3)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

□ 응능부담의 공평과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체계 일원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산취득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도 국제적 정합성에서 중요한 측면임
- 첫째로 유산취득세형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음
- 또한,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 유산을 분할할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분할을 촉진할 수 있는 유산취득세형이 부의 집중 억제 측면에서 유산세형보다 높은 효과를 보일 것임

○ 둘째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일원화 측면에서 현재 상속세의 보완세¹¹⁾인 증여세가 유산취득세 체계를 취하고 있어 상속·증여세제 간 일관된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해야 함

□ 다만,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과세행정 및 과세환경상 이유가 있었고, 유산취득세 방식에는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장분할의 가능성이 존재함¹²⁾

- 유산세 방식은 세무행정상 용이하고 세수증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지만, 이제 유산취득세 방식도 세무행정 부담이 크지 않고,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음
- 유산취득세 체계에 대한 가장 큰 우려인 위장분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행정 시스템의 정비 등이 요구되며, 아울러 예측하지 못한 사망이나 상속인 간의 분쟁 등을 대비하여 사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제도로 고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함

11) 보완세라는 의미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사례가 있어 상속세를 보완한다는 것이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의미에서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된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함
 12) 유산취득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일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유분에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임

(4) 기업상속공제제도 개선 - 자본이득세 도입**□ 기업상속공제제도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 변경하고, 기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며,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영국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기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토록 해야 함
 - 또한, 기업상속공제상 기업의 계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업종유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함
 -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현행 4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적격합병 과세특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

-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 시 사망자(피상속인)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 시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

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임

-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실효성이 없는 현행 기업상속공제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세법개정에서도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업상속자산을 추후 양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며, 추후 유예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자본이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간소화 측면에서 합리적임
- 다만,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야 함

〈표 10〉 기업승계 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구 분		자본이득세 도입방안
요건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기업
	가업 및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5년 이상 경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 30%(상장 15%) 이상(특수관계인 포함)
지원방법		<과세이연> • 상속 시 주식 비과세 • 대상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 과세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5년 •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자산 50% 이상 처분금지 - 업종유지 요건 폐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총급여기준 매년 90%(대기업 100%)

〈참고문헌〉

김두복,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2.

김용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9.

인경봉·홍순기,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6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6.

임동원,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 문제점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0.11.

William W. Beach. 2001. "Time to Repeal Federal Death Tax : the Nightmare of the American Dream", Backgrounder,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연도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2.7.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2022.12.23.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3년 6월 1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